|  |  |  |
| --- | --- | --- |
| **1.2.4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2008년 1월 24일 해관총서 령 제169호로 반포,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제1조**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 신고수속에 편리를 도모하고 수출입 화물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신고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집중신고라 함은 해관의 등록을 거친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이하 송수하인이라 함)이 동일 개항지에서 여러 회에 나누어 이 방법 제3조의 규정범위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집중신고리스트》(별지 1 참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화물 집중신고리스트》(별지 2 참조)(이하 집중신고리스트라 통칭 함)에 따라 화물의 수출입을 신고한 다음 다시 통관신고서에 따라 해관의 수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통관방식을 가리킨다.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은 B류 이상 관리유형(B류 포함)의 통관기업에 위탁하여 관련 수속을 집중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3조** 해관의 등록을 거쳐 아래의 수출입화물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부류의 출판물 등 시효성이 강한 화물  (2) 위험품 또는 신선하거나 쉽게 부식, 실효되는 등의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화물  (3) 도로개항지의 출입국 보세화물. **제4조** 송수하인은 화물 소재지의 해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가공무역기업은 관할 해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신청할 시에는 해관에 《집중신고 통관방식 적용 등록표》(이하 등록표라 함, 별지 3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해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의 유효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해관은 송수하인이 제출한 등록표를 심사하며, 심사를 거쳐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허가한다.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가 있어 해관으로부터 입안조사를 받고 있는 송수하인, 지재권 침해화물의 수출입으로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송수하인, C류 또는 D류 관리를 적용하는 송수하인이 이 방법 제3조에 열거한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록 유효기간 내에 송수하인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 유효기간은 송수하인이 제공한 담보의 유효기간에 따라 확정된다.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고자 신청한 화물, 담보 상황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송수하인은 원 등록지 해관에 서면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송수하인이 계속 집중신고 방식으로 통관수속을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전에 원 등록지 해관에 서면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송수하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정지해야 한다.  (1) 담보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유효적인 담보를 계속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로 인해 해관으로부터 입안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지재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하여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해관의 분류 관리유형이 C류 또는 D류로 강등된 경우. 송수하인은 등록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집중신고 통관방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송수하인이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 등록해관에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표의 효력이 종료된다. 송수하인이 계속 집중신고 방식으로 통관수속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중신고 통관방식으로 해관의 수속을 밟는 송수하인은, 수입화물은 그 적재 운송수단의 입국을 신고하는 14일 전에, 수출화물은 해관의 감독관리 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하는 24시간 전에 집중신고리스트를 작성하여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하인이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후 해관에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하인은 통관신고서에 따라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심사할 때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수첩(장부) 또는 전자장부의 데이터를 심사 상계하며, 일반무역화물에 대하여는 집중신고 등록데이터를 심사 대조한다. 심사를 거쳐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가 집중신고등록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주며, 송수하인은 통관신고방식에 따라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송수하인은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심사 완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집중신고리스트와 첨부 증빙을 지참하고 화물 소재지의 해관에서 통관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관리에 속하는 경우 송수하인은 상응한 허가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관련 증서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고 사본을 남겨 보관한다. 송수하인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해관의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해관은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삭제하며, 송수하인은 해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재신고 일자가 운송수단 입국 신고일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관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송수하인이 리스트신고 후 집중신고리스트를 수정 또는 취소한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정과 취소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송수하인은 1개월 내에 집중신고리스트로 신고한 데이터를 합병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해관에 가서 일반무역 화물은 익월 10일 전에, 보세화물은 익월 말 전에 집중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반무역 화물의 집중신고 수속은 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   **제14조** 집중신고리스트를 하나의 통관신고서에 병합시켰을 경우 각 리스트의 출입국 개항지, 경영단위, 경내 송수하인, 무역방식(감독관리 방식), 발송국가(지역), 적재항, 도착국가(지역), 운송방식 및 적용세율, 환율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각 리스트 중 이 조 전항의 규정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송수하인은 각각 부동한 통관신고서를 병합시켜 신고해야 한다. 병합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 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각 리스트를 하나의 통관신고서로 병합시킬 때 각 리스트에 기재한 상품항목은 상품번호, 상품명칭, 규격사이즈, 단위, 원산국(지역), 단가 및 통화단위가 모두 일치한 상황에서만 물량과 총가격의 합병이 가능하다. **제15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에서 신고한 화물을 통관신고서 방식으로 해관 수속을 밟을 시 과세화물은 해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서 관리에 속하는 경우는 해관의 심사의견이 기재된 상응한 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통관신고리스트의 신고 접수일의 세율, 환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제17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해관수속을 처리 완료한 후 해관은 수출입화물의 집중신고 통관신고서에 따라 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수출입일자는 해관이 통관신고서의 신고를 접수한 일자에 준한다. **제18조** 해관은 통관신고서의 수출입일자에 따라 집중신고 화물을 통계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타 지역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를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 집중신고방식으로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해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이 방법을 어기고 밀수행위,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구성한 경우 해관은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해관총서과 책임진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생략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集中申报管理办法**2008年1月24日海关总署第169号令发布，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218号修改　　**第一条**　为了便利进出口货物收发货人办理申报手续，提高进出口货物通关效率，规范对进出口货物的申报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集中申报是指经海关备案，进出口货物收发货人（以下简称收发货人）在同一口岸多批次进出口本办法第三条规定范围内货物，可以先以《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集中申报清单》（见附件1）或者《中华人民共和国海关出口货物集中申报清单》（见附件2）（以下统称《集中申报清单》）申报货物进出口，再以报关单集中办理海关手续的特殊通关方式。　　进出口货物收发货人可以委托B类以上管理类别（含B类）的报关企业办理集中申报有关手续。　　**第三条**　经海关备案，下列进出口货物可以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　　（一）图书、报纸、期刊类出版物等时效性较强的货物；　　（二）危险品或者鲜活、易腐、易失效等不宜长期保存的货物；　　（三）公路口岸进出境的保税货物。　　**第四条**　收发货人应当在货物所在地海关办理集中申报备案手续，加工贸易企业应当在主管地海关办理集中申报备案手续。　　**第五条**　收发货人申请办理集中申报备案手续的，应当向海关提交《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备案表》（以下简称《备案表》，见附件3），同时提供符合海关要求的担保，担保有效期最短不得少于3个月。　　海关应当对收发货人提交的《备案表》进行审核。经审核符合本办法有关规定的，核准其备案。　　涉嫌走私或者违规，正在被海关立案调查的收发货人、因进出口侵犯知识产权货物被海关依法给予行政处罚的收发货人、适用C类或者D类管理类别的收发货人进出口本办法第三条所列货物的，不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　　**第六条**　在备案有效期内，收发货人可以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备案有效期限按照收发货人提交的担保有效期核定。　　申请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的货物、担保情况等发生变更时，收发货人应当向原备案地海关书面申请变更。　　备案有效期届满可以延续。收发货人需要继续适用集中申报方式办理通关手续的，应当在备案有效期届满10日前向原备案地海关书面申请延期。　　**第七条**　收发货人有下列情形之一的，停止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　　（一）担保情况发生变更，不能继续提供有效担保的；　　（二）涉嫌走私或者违规，正在被海关立案调查的；　　（三）进出口侵犯知识产权货物，被海关依法给予行政处罚的； 　　（四）海关分类管理类别被降为C类或者D类的。　　收发货人可以在备案有效期内主动申请终止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　　**第八条**　收发货人在备案有效期届满前未向原备案地海关申请延期的，《备案表》效力终止。收发货人需要继续按照集中申报方式办理通关手续的，应当重新申请备案。　　**第九条**　依照本办法规定以集中申报通关方式办理海关手续的收发货人，应当在载运进口货物的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14日内，出口货物在运抵海关监管区后、装货的24小时前填制《集中申报清单》向海关申报。　　收货人在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14日后向海关申报进口的，不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收货人应当以报关单向海关申报。　**第十条**　海关审核集中申报清单电子数据时，对保税货物核扣加工贸易手册（账册）或者电子账册数据；对一般贸易货物核对集中申报备案数据。　　经审核，海关发现集中申报清单电子数据与集中申报备案数据不一致的，应当予以退单。收发货人应当以报关单方式向海关申报。　　**第十一条**　收发货人应当自海关审结集中申报清单电子数据之日起3日内，持《集中申报清单》及随附单证到货物所在地海关办理交单验放手续。属于许可证件管理的，收发货人还应当提交相应的许可证件，海关应当在相关证件上批注并留存复印件。　　收发货人未在本条第一款规定期限办理相关海关手续的，海关删除集中申报清单电子数据，收发货人应当重新向海关申报。重新申报日期超过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14日的，应当以报关单申报。　　**第十二条**　收发货人在清单申报后修改或者撤销集中申报清单的，参照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的相关规定办理。　　**第十三条**　收发货人应当对一个月内以《集中申报清单》申报的数据进行归并，填制进出口货物报关单，一般贸易货物在次月10日之前、保税货物在次月底之前到海关办理集中申报手续。　　一般贸易货物集中申报手续不得跨年度办理。　　**第十四条**　《集中申报清单》归并为同一份报关单的，各清单中的进出境口岸、经营单位、境内收发货人、贸易方式（监管方式）、启运国（地区）、装货港、运抵国（地区）、运输方式栏目以及适用的税率、汇率必须一致。　　各清单中本条前款规定项目不一致的，收发货人应当分别归并为不同的报关单进行申报。对确实不能归并的，应当填写单独的报关单进行申报。　　各清单归并为同一份报关单时，各清单中载明的商品项在商品编号、商品名称、规格型号、单位、原产国（地区）、单价和币制均一致的情况下可以进行数量和总价的合并。　**第十五条**　收发货人对《集中申报清单》申报的货物以报关单方式办理海关手续时，应当按照海关规定对涉税的货物办理税款缴纳手续。涉及许可证件管理的，应当提交海关批注过的相应许可证件。　　**第十六条**　对适用集中申报通关方式的货物，海关按照接受清单申报之日实施的税率、汇率计征税费。　　**第十七条**　收发货人办结集中申报海关手续后，海关按集中申报进出口货物报关单签发报关单证明联。“进出口日期”以海关接受报关单申报的日期为准。　　**第十八条**　海关对集中申报的货物以报关单上的“进出口日期”为准列入海关统计。　　**第十九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其他地区进出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的货物需要按照集中申报方式办理通关手续的，除海关另有规定以外，参照本办法办理。　　**第二十条**　违反本办法，构成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或者其他违反海关法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08年5月1日起施行。　　附件：（略） |